「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8월 21일

고흥군의회의장

고흥군의회 훈령 제2024-15호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 훈령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한다.
-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로,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토킹”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성폭력을”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로, “성희롱·성폭력 및”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으로, “성희롱·성폭력 및”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을”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8조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및”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희롱·성폭력과”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로, “성희롱·성폭력의”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및 제7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16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19조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 제22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고흥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토킹"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	4. ----------

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 ----------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고흥군의회 소속 직원(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2.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5.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④ ----------.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사이버 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 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제9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 ----------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주제절차 및 보호조치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5.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의정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제10조(고충상담 신청 등)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상담·처리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제10조(고충상담 신청 등)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 ---------- ---------- ----------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 ---------- ---------- ---------- --.
②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을 조사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	② ----------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 ---.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⑦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	⑦ ----------

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 ---------- ----------.
제12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사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성폭	제13조(조사의 중지) ---------- ---------- ---------- 성희롱·성폭

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력·스토킹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생 략)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 설>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③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④ ----------.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사의 종결) 의장은 고충상담·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제19조(조사의 종결) ----------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20조(징계)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⑤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	제22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

과에 대한 통지) ·지침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에 대한 통지) 지침 제20조제1항 --------- 제21조제1항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